

심의결과

원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가결

(별표) 9. 단서조항 신설 중

"1인 다계좌 보유"를

"계좌 보유"로 수정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제 17호	제 9 차	1986. 3 . 27.	총재 박 성 상

의 안 "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" 일부 개정

의결 사항 금융기관 여수신 이율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제의 관계
법규 조항 한국은행법 제7조 및 제 65조

제의 취지 가계의 소액장기저축에 대한 세금우대제도 실시에 따라
가계우대정기적금의 가입자도 세금우대 종합통장에 의해
동 적금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 세금경감혜택을 받을 수
있도록 가계우대정기적금의 가입조건을 일부 완화함으로써
가계의 장기저축증대를 도모하고자 본건 전기와 같이
의결할 것을 제의함

< 참 고 > 관계법규조항 발췌

한 국 은 행 법 제 7 조

- ① (생 략)
- ②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이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명백히 부여된 기타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한다.
- ③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- ④ - ⑤ (생 략)

한 국 은 행 법 제 65 조

- ①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, 기탁지급금의 최고율을 정할 수 있다.

- ② (생 략)

금융기관 여수선 이율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(안)

현행	개정 (안)
제 1조 ~ 제 5조 (생 략) (신 설)	제 1조 ~ 제 5조 (현 행 과 같 음) 부 칙 이 규정은 1986. 4. 1. 부터 시행한다.

< 별표 >

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

구 분	이 율
1 ~ 8.	(생 략)
9. <u>가계우대정기적금</u>	연 13.0% (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,000만원 이내) (신 설)
10. ~ 11.	(생 략)

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

구 분	이 율
1. ~ 8.	(현행과 같)
9. <u>가계우대정기적금</u>	연 13.0% (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1,000만원 이내 다만 세금우대종 적금에 가입함에 다계좌 보유 및 초과는 예외로
10. ~ 11.	(현행과 같)

『금융기관 여수선 이율 등에 관한 규정』 일부 개정(안)

행	개 정 (안)								
(생 략) (신 설) 기타지급금의 최고율	제 1조 ~ 제 5조 (현 행 과 같 음) 부 칙 이 규정은 1986. 4. 1 . 부터 시행한다. < 별 표 > 수신이자 및 기타지급금의 최고율								
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0 977 171 1058"></th><th data-bbox="171 977 695 1058">이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0 1058 171 1784"></td><td data-bbox="171 1058 695 1784"> (생 략) 연 13.0% (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,000만원 이내) (신 설) (생 략)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	이 율		(생 략) 연 13.0% (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,000만원 이내) (신 설) (생 략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695 977 1260 1058">구 분</th><th data-bbox="1260 977 1691 1058">이 율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695 1058 1260 1784"> 1. ~ 8. 9. <u>가계우대정기적금</u> 10. ~ 11. </td><td data-bbox="1260 1058 1691 1784"> (현행과 같음) 연 13.0% (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,000만원 이내 다만 <u>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1인 다계좌 보유 및 계약액 한도 초과는 예외로 함</u>) (현행과 같음) 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이 율	1. ~ 8. 9. <u>가계우대정기적금</u> 10. ~ 11.	(현행과 같음) 연 13.0% (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,000만원 이내 다만 <u>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1인 다계좌 보유 및 계약액 한도 초과는 예외로 함</u>) (현행과 같음)
	이 율								
	(생 략) 연 13.0% (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,000만원 이내) (신 설) (생 략)								
구 분	이 율								
1. ~ 8. 9. <u>가계우대정기적금</u> 10. ~ 11.	(현행과 같음) 연 13.0% (실명의 1인 1계좌에 한하며 계약기간은 3년 계약액은 1,000만원 이내 다만 <u>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동 적금에 가입함에 따른 1인 다계좌 보유 및 계약액 한도 초과는 예외로 함</u>) (현행과 같음)								